

심의회가 운영상 실익이 없어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6인 및 9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바, 위원 정수가 1명 초과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수정(안)가결함 것을 동의

6 숙제(안) 8장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7.2.22. 김세창의
원회 1인

나. 수정이유 : 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글자 :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
을 “5인”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의 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3

제안년월일 : '97. 2. 22.

제 안 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수정글자

○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이내”를 “5인 이내”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이내”를 “5인이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164

1. 개정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1일 가산(안 제18조제3항)

나. 오전, 오후 반일단위 연가 허가(안 제20조제3항) 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안 제22조제3항)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44호)	제20조중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4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증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각각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영리업무의 금지”를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② (생 략)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병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7. (생 략) 신 설	제23조(공가) 1.~7. (현행과 같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⑤ (생 략) ⑥ 소속기간의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 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재직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⑦ (현행과 같음)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